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71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김승수·신성범·김정재

권영세 • 이인선 • 이달희

김상훈 · 김예지 · 한지아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문화유산"이라 함) 및 천연기념물 등(이하 "자연유산"이라 함)은 소유자인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 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관리·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전시관과 같은 관람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상회복 등을 전제로 일부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 허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및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70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19호 및 제2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9	「문화유/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사용.	료등의	감면	및	2034.	12.	31.
	한 법률」 제66조의2						장기 사용허가등						
220	「자연유/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사용.	료등의	감면	및	2034.	12.	31.
	한 법률」 제63조						장기 사용허가등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